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안내

- 취업지원유형 및 창업지원유형-

가. 사업목적

- (1)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
- (2)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기여

나. 장학생 선발 프로세스



다. 신청 방법 (※사업신청을 위한 수요조사 단계의 지원신청 임)

- (1) 신청기간 : 2015.3.9.(월) 오후 5시 까지
- (2) 신청방법 : '지원서'를 작성하여 청년기업가센터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
 - 청년기업가센터 : 동국대 본관 3층 미래인재개발원내 위치
 - 이메일: honghui@dongguk.edu ※ 말머리 [희망사다리] 표기 바람.
- (3) 제출서류 : 희망사다리 (취업지원유형 또는 창업지원유형) 지원서 1부
 - ※ 사전 수요조사를 위한 지원서류이며, 향후 장학생 선발시 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요청 예정임.

라. 지원대상

구분		내 용	비고
전체공통 요건		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∘ 대학교 3,4학년(5년제는 5학년도 가능) ∘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	
취업 지원 유형	공통	현장실습(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)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자격증 취득목적 현장실습 제외	
	취업확정유형	 현장실습을 이수하고,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졸업 후 취업을 예정(고용계약서 체결) 된자 	
	취업전제유형	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, 해당학기 내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자(고용계약서 체결 필수) 	
창업 지원 유형		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수강 예정자(기 창업대학생 포함)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, 사치조장 및 유흥·향락 등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학점교류를 활용한 창업 강좌 수간내역도 인정 	

마. 장학금 지원내용

구분	내 용	비고
지원기간	장학생 선정 이후,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동일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지원 가능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	
지원장학금	 등록금: 매학기 대학 등록금(수업료,기성회비) 전액 취업(창업)준비장려금: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취업(창업)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창업지원유형 장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졸업시까지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.(단, 경진대회 등 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해당 없음) 	

바. 학생(장학생) 의무사항

구분	내 용	비고
공통	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실시 이수시간: 매학기 교육 총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(공통교육10시간+현장실무교육30시간) - 공통직무교육: 재단 온라인교육센터(http://kosaf.sbc.or.kr)에서 수강 - 현장실무교육: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진행 또는 취업예정 기업 분야·창업관련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이수 ※ 개별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, 온라인강의 수강증,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증빙서류 제출 • 결과보고: 장학생은 교육 이수 후,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• 교육 미이수자: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, 다음 학기 취업·창업 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※ 다만,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	
취업 지원 유형	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근무 근무(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)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※ 의무근무기간 =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, 군입대·질병·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(증빙필요) 발생 시 유예가능 	
창업 지원 유형	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(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)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※ 의무창업 유지기간 =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 ※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-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·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- (유지조건)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	

사. 의무근무(창업) 미 준수시 지원금 환수 내용

- (환수대상)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
- (환수범위)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업(창업)준비 장려금 전액
- (환수금액) 총 의무근무기간 중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
 - ※ 금액: [(전문)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) × (남은 의무기간/총 의무근무 기간(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)]
- (환수방법)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으로 확정된 환수금액 반환
- (환수절차) 대상자확인→환수금액산정→환수통보→환수방법결정 및 이의신청→환수실시
- **(유예기간)** 장학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 인정 가능